

#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발의연월일 : 2023. 7. .

발 의 자 : 박선미 의원

## 1. 제안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를 유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주차시설 설치, 무단 방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함. (안 제2조)
-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운전자 의무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준수사항, 관련 교통법규 등 관련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업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보험가입, 신속한 이동 조치 등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주차시설, 무단 방치 금지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